

한국농어촌공사 전문계약직(변호사) 채용 공고

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함께 근무할 전문계약직(변호사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7월 22일

한국농어촌공사 사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인원	직무내용	근무부서
전문계약직 (변호사)	1명	○ 공사 자산 소유권 확보 소송 대리, 지원 ○ 자산 분야(매각, 임대, 개인명의 취득, 무단점유 등) 법적 검토 및 법률 자문 등	한국농어촌공사 자산재무처(본사)

※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,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.

※ 자격증은 채용 접수 마감일까지 보유한 자격증(자격취득확인서 포함)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
2. 근로조건

근무시간	급여수준(세전)	채용기간	근무지
주 5일, 8시간/일 *근무시간(09:00~18:00) 휴게시간(12:00~13:00)	(하한) 70,812천원 (상한) 100,512천원 *성과연봉 별도	채용일로부터 ~2027.12.31	한국농어촌공사 본사 (전남 나주시 그린로20)

※ [급여수준] 공사 「계약직근로자연봉관리세칙」에 따름

※ [기타 복무조건] 공사 「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」 등 관련 규정에 따름

※ [채용기간]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

3. 응시자격

구분	자격요건
공 통	○ 「변호사법」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-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의무연수기간을 마친 자 ○ 학력, 성별, 연령 제한 없음 ○ 임용예정일('26.9.14)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○ 공사 「인사규정」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(첨부1) ○ 남자의 경우 「병역법」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우대사항	○ 취업지원대상자

4. 채용절차



※ (허들식 채용)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

※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관련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(단,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적용)

◇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

□ 서류전형

- 제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(적격자 전원 선발)

< 부적합 기준 >

- 자격요건 미충족(응시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)
- 지원서 불성실 작성자
 - 타기관명 기재, 표절 등
 - 동일 문자 및 의미 없는 단어 반복 기재
 - 자기소개서 중 1개 항목 이상 미기재 또는 분량 미달(허용 글자 수의 30% 미만)
-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서·서식 등의 미작성
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

* [동점자 처리]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, 대상자 전원 합격 처리

【평가항목 및 배점(서류전형)】

계	경력*	자격**	입사지원 및 자기소개서			
			지원동기	조직이해	공직윤리	발전가능성
100점	20점	20점	15점	15점	15점	15점

* [경력] 변호사 자격 보유 이후 채용분야(변호사)와 관련된 업무경력에 한함
(2개 이상 경력기간 합산 시 경력기간을 월까지 각각 산정 후 합산)

→ 4년 이상 20점, 3년 이상 18점, 2년 이상 16점, 1년 이상 14점, 1년 미만 12점

** [자격] 자격증은 채용 접수마감일까지 보유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

→ 변호사 12점, 공인회계사·감정평가사·공인노무사·세무사·법무사 각 4점 가산하되 최대 2개 인정(8점)

□ 면접전형

-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아래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
 - 면접 세부일정·장소 등은 대상자(서류전형 합격자)에게 별도 안내 예정

【평가항목 및 배점(면접전형)】

계	직무적합성(40)		직무수행능력(60)			
	지원동기	조직적합성	문제해결	의사소통	대인관계	자기개발
100점	20점	20점	15점	15점	15점	15점

○ 최종 합격자 결정

- 면접심사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며,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전형 각 과목별(직무적합성, 직무수행능력)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※ 동점자 처리기준: (1순위) 취업지원대상자, (2순위) 서류전형 고득점자
 - ※ 면접전형 총점은 각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,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(셋째자리에서 버림)
- 면접전형 각 과목별(직무적합성, 직무수행능력)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, 각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순번을 적용하고,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(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그 익일) 이내에 차순위자 예비후보자를 합격자로 함(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)

5. 지원서 접수

□ 접수기간: 2026. 7. 22(수) ~ 2026. 8. 6.(목) 16:00 (※마감시각 준수)

□ 접수방법: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recruit.incruit.com/ekr>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◇ 접수 마감일은 다수 동시접속 등으로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일시를 고려하여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 작성 중인 지원서라도 마감일 16:00까지 제출완료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하오니, 반드시 지원서 제출 완료 및 수험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접수시간 종료 후 수정 불가)

◇ 최종 제출 완료 전 자격, 경력 등 기재사항(일자, 등록번호 등)을 제출 예정인 증빙서류와 대조함으로써 정확히 기재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6. 채용일정

구 분	일 자	주 요 내 용
공고일	7.22(수)	•채용공고(공사 홈페이지 등) 14일 이상
지원서 접수	7.22(수) ~8.6(목)	•채용홈페이지(https://recruit.incruit.com/e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 * 8.6(목) 16:00까지 접수에 한함
서류심사	8.10(월)	•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자격증, 경력 등 종합평가
서류심사 합격자 발표	8.12(수)	•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
면접전형	8.24(월)	•한국농어촌공사 자산재무처 면접 실시(예정) •증빙서류 제출(해당자) * 증빙서류 미제출, 입사지원서 내용과 다른 경우 불이익 조치
최종합격자 발표	8.27(목)	•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
임용	9.14(월)(예정)	•임용 시 필요서류 제출(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)
예비합격자 운영	10.26(월)	•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

※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7. 증빙서류 제출

□ 면접전형 시 제출서류(면접전형 당일 직접 제출)

- 면접전형 시 제출 서류는 면접전형 당일에 면접대상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 확인 결과 응시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정보와 “불일치” 할 경우 불인정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사전 발급받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 등을 작성

- (해당자) 자격증 사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(한국산업인력공단) 1부
- (해당자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
- (해당자) 경력증빙서류 각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
 -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1부
 - *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하며 부서명, 담당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.
입사일과 퇴사일(경력증명서의 경우)이 “년, 월, 일”까지 표기된 서류에 한함
- 모든 응시자격 및 평가대상이 되는 항목은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, 증빙서류는 반드시 아래 발급유효기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8.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

- ☐ 우리공사는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,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입사지원정보 외 아래의 취득정보는 합리적인 목적과 사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

구 분	정보취득시점	목적 및 사유
본인 확인	지원서 접수 시	○ 응시자 본인 확인
취업지원대상자 여부	지원서 접수 시	○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우대하는 용도로만 활용

- ☐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, 가족관계, 학력 등의 사항과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서 수집·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·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9. 이의신청 안내

- ☐ 접수기간 :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
- ☐ 처리방법 :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, 이의내용 검토결과 회신

【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】

- (1)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, 절차 등에 관한 문의사항
- (2)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- (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
10. 유의사항

- ☐ 응시원서에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기재착오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❑ 최종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 서류의 위·변조 등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. 특히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·변조임이 판명되면 합격을 무효로 하고 공사 채용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.
- ❑ 면접 시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기간유효여권, 운전면허증 한정)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‘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’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❑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, 재응시 자격 제한,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
- ❑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(채용관리 세칙 제19조의2)에 따라 조치합니다.
- ❑ 면접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면접탈락자에 한해 가능하며, <첨부 5> 양식을 작성하여 공사를 방문하여 원본 제출하거나, 스캔하여 송부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.
- ❑ 심사결과 채용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❑ 기타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자산재무처 채용담당자에게(061-338-6083)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7. 22.

한국농어촌공사 사장

【첨부 1】

인사규정 제9조 결격사유

제9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10.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3.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
14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